

1. 개정이유

현행 실내장식물 중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되는 목재 및 합판 등 현장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7일로 단축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,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대한 보완횟수를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체의 편의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처리 기간 단축[안 제3조제1항제2호(별지제2호)]
 -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를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
- 나.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보완횟수 확대 (안 제7조제3항, 제16조제3항)
 -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횟수를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
- 라. 기 타 :

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후단 중 “2회”를 “5회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 후단 중 “2회”를 “5회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10일”을 “7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형식승인의 방법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기술원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형식승인기준이나 형식승인시험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 횟수는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 <u>2회</u> 를 넘을 수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. ④ · ⑤ (생략)	제7조(형식승인의 방법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 <u>5회</u> ----- -----.
제16조(성능인증의 방법) ① · ② (생략) ③ 기술원은 성능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견본품이나 시험시설이 성능인증기준이나 성능인증시험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완 횟수는 견본품에 대한 보완 횟수와 시험시설에 대한 보완 횟수를 합하여	제16조(성능인증의 방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

2회를 넘을 수 없으며 회당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.

④・⑤ (생략)

[별지 제2호서식] 현장처리물품
방염성능검사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10일

5회-----
-----.

④・⑤ (현행과 같음)

[별지 제2호서식] 현장처리물품
방염성능검사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		7일

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	
신청인 (법인·은 대표자)	성명(명칭)	상 호		
	방염처리업 등록번호	전화번호		
	주 소			
방염처리장소	상 호	대표자 성명		
	주 소			
방염물품	구 분	대상물품	처리방법	면 적(㎡)
	시료1			
	시료2			
	시료3			
	처리기간	~	면 적 계	
사용방염제	제조업체명	형식승인번호		
	제조연월	제품검사합격 표시번호		

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
검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 및 상호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	시공명세서 1부	수수료 20,000원
	※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가로 29cm, 가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 별,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하여야 합니다.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